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0
----------	-----

제출년월일 : 2020. 10.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2020년도 조직진단 용역 결과 반영 등에 따른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비를 실시하고, 지역현안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 조정 현황

현 행	개 편	비 고
본청 2국 1실 14과(80담당) 직속기관 5과(27담당) 1사업소(3담당) 의회(1담당) 8읍면 1출장소(38담당)	본청 2국 1실 15과(87담당) 직속기관 5과(29담당) 1사업소(4담당) 의회(1담당) 8읍면 1출장소(38담당)	+1과(+7담당) +2담당 +1담당 - -

나. 부서 폐지·신설·명칭변경 및 분장사무 대강 조정(안 제5조, 12조)

구 분	부 서	비 고
폐 지	시설관리과	△1
신 설	가족복지과, 안전교통과	2
과 이동	허가과 (행정지원국 ⇨ 경제건설국)	1
명칭변경	복지과 ⇨ 복지정책과 안전건설과 ⇨ 건설과 유통원예과 ⇨ 유통산업과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불임(관계법령 발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09.29.~10.09) : 의견제출 1건

- 교통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한 안전과→안전교통과 변경 요청

- 의견 수용(안전과→안전교통과로 변경 추진)

2) 규제심사 : 비규제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올림픽유산과, 복지과, 민원과, 재무과, 허가과, 교육체육과”를 “올림픽유산과,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민원과, 재무과, 교육체육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3호, 제1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종전의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18. 그 밖의 올림픽·복지·민원·세무·교육·체육행정·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시설관리과”를 “문화관광과, 허가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안전교통과, 건설과, 도시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5호와 제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인허가 민원접수 처리 및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26. 건축·농지·산지민원에 관한 허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7. 그 밖의 문화관광·인허가·경제·일자리·환경·산림·안전·재

난방재·건설행정·도시개발·경관에 관한 사항

제11조 중 “유통원예과장”를 “유통산업과장”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축산과

가. 농업정책에 관한 업무

나. 원예 특용작물에 관한 업무

다. 식량작물에 관한 업무

라. 친환경농업에 관한 업무

마. 축산행정의 종합계획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바. 가축개량 및 축산물의 유통관련 업무

사. 내수면 및 황태산업 육성지원 업무

아. 낙농초지 및 가축위생 관련 업무

2. 유통산업과

가. 농산물 유통개선 및 산지유통시설에 관한 업무

나. 농촌산업·농촌개발·농촌활력에 관한 업무

다. 농특산물 수출 및 농식품산업에 관한 업무

라. 지역단위 푸드플랜 및 학교공공급식에 관한 업무

마. 농업·농촌 6차산업화 관련 업무

3. 기술지원과

- 가. 농촌지도 및 농업기술개발에 관한 업무
- 나. 농업 교육 및 농업관련 단체 육성 지도에 관한 업무
- 다. 지역특화작물 개발에 관한 업무
- 라. 영농기계화 개발에 관한 업무
- 마. 농산물 가공기술 지도에 관한 업무
- 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업무
- 사. 농촌생활개선에 관한 업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복지과장, 유통원예과장”을 “복지정책과장, 유통산업과장”으로 한다.

② 평창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평창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평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복지과장”을 “가족복지과장”으로 한다.

⑤ 평창군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복지과장, 안전건설과장”을 “복지정책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⑥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복지과장”을 “가족복지과장”으로 한다.

⑦ 평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⑧ 평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복지과장”을 “가족복지과장”으로 한다.

⑨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복지과장”을 “가족복지과장”으로 한다.

⑩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⑪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⑫ 평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안전건설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⑬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⑭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⑮ 평창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⑯ 평창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⑰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⑱ 평창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⑲ 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⑳ 평창군 농업기반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

제3조제3항제4호 다목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 평창군 물 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 평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 평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유통원예과장”을 “유통산업과장”으로 한다.

·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유통원예과장”을 “유통산업과장”으로 한다.

·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유통원예과장”을 “유통산업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유통원예과장”을 “유통산업과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p> <p>① 행정지원국에 <u>올림픽유산과, 복지과, 민원과, 재무과, 허가과, 교육체육과</u>를 둔다.</p> <p>② (생 략)</p> <p>1. ~ 12. (생 략)</p> <p>13. 인허가 민원접수 처리 및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p> <p>14. 건축·농지·산지민원에 관한 허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p> <p>15. ~ 18. (생 략)</p> <p>19. <u>그 밖의 올림픽·복지·민원·세무·인허가·교육·체육행정에 관한 사항</u></p> <p><신 설></p> <p>제6조(경제건설국에 두는 과)</p> <p>① 경제건설국에 <u>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시설관리과</u>를 둔다.</p>	<p>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p> <p>① ----- 올림픽유산과,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민원과, 재무과, 교육체육과 -----.</p> <p>② (현행과 같음)</p> <p>1. ~ 12.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삭 제></p> <p>13. ~ 16. (현행과 같음)</p> <p>17. 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p> <p>18. 그 밖의 올림픽·복지·민원·세무·교육·체육행정·체육시설에 관한 사항</p> <p>제6조(경제건설국에 두는 과)</p> <p>① ----- 문화관광과, 허가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안전교통과, 건설과, 도시과 -----.</p>

② (생략)

1. ~ 24. (생략)

25. 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26. 그 밖의 문화관광·경제·일자
리·환경·산림·안전·재난
방재·건설행정·도시개발·경
관·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제11조(소장 등) 센터에 소장 및 농
업축산과장·유통원예과장·기술지
원과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과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
휘·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생략)

1. 농업축산과

가. 농업정책에 관한 업무

나. 농촌개발에 관한 업무

다. 축산행정의 종합계획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라. 가축개량 및 축산물의 유통
관련 업무

마. 내수면 및 수산제조업 관련
업무

② (현행과 같음)

1. ~ 24. (현행과 같음)

25. 인허가 민원접수 처리 및 개발
행위에 관한 사항

26. 건축·농지·산지민원에 관한
허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7. 그 밖의 문화관광·인허가·
경제·일자리·환경·산림·안
전·재난방재·건설행정·도시
개발·경관에 관한 사항

제11조(소장 등) -----
----- 유통산업과장 ----

-----.

제12조(소관사무) (현행과 같음)

1. 농업축산과

가. 농업정책에 관한 업무

나. 원예 특용작물에 관한 업무

다. 식량작물에 관한 업무

라. 친환경농업에 관한 업무

마. 축산행정의 종합계획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바. 가축개량 및 축산물의 유통
관련 업무

바. 낙농초지 및 가축위생 관련
업무

사. 농업·농촌 6차산업화 관련
업무

2. 유통원예과

가. 농산물 유통 및 정부 양곡관
리에 관한 업무

나. 원예 특용작물에 관한 업무

다. 농산물 가공사업에 관한 업무

라.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마. 친환경농업에 관한 업무

3. 기술지원과

가. 농촌지도 및 일반농업에 관한
업무

나. 농민 교육 및 농업관련 단체
육성 지도

다. 지역특화작물 개발

라. 영농기계화, 농작물 병해충
방제 및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사. 내수면 및 황태산업 육성
지원 업무

아. 낙농초지 및 가축위생
관련 업무

2. 유통산업과

가. 농산물 유통개선 및 산지
유통시설에 관한 업무

나. 농촌산업·농촌개발·농촌
활력에 관한 업무

다. 농특산물 수출 및 농식품
산업에 관한 업무

라. 지역단위 푸드플랜 및
학교공공급식에 관한 업무

마. 농업·농촌 6차산업화 관련
업무

3. 기술지원과

가. 농촌지도 및 농업기술개발에
관한 업무

나. 농업 교육 및 농업관련 단체
육성 지도에 관한 업무

다. 지역특화작물 개발에 관한
업무

라. 영농기계화 개발에 관한 업무
마. 농산물 가공기술 지도에 관한
업무

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업무

사. 농촌생활개선에 관한 업무

관계 법령 발취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생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3.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의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행정과장 최찬섭
연락처	(033) 330 - 2210